

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 법령 변경 및 행정 여건에 맞춘 조문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근거 법령을 「특허법」에서 「발명진흥법」으로 변경
- 나. 행정 여건에 맞춘 조문 개정 및 관련 법령 변경
- 다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근거법규

- 가.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 및 제15조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4. 10. 27 ~ 2014. 12. 8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특허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국가공무원을 제외 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”으로, “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호”를 “뜻은 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공무원이”를 ““직무발명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”로, “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자유발명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“자유발명”이란 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발명자”라 함은”을 ““발명자”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직무발명에 의한”을 “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, “제6조의규정에”를 “제6조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5조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「특허법」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2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0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”를 “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3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</u>	<u>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,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<u>울산광역시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<u>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</u> ----- 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뜻은 다음 각 호----- -----.
1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	1. “직무발명”이란 <u>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이</u>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2. “자유발명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.	2. “자유발명”이란 제1호에 따른 ----- -----.
3. “발명자”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.	3. “발명자”란 ----- -----.
제3조(권리의 구승계) ① 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. 다만,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3조(권리의 구승계) ① --- 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발명자에 대한 보상) 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	제4조(발명자에 대한 보상) --- 제3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
제5조(업무의 관장) <u>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</u>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	제5조(업무의 관장) <u>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

(제173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현행	개정안
1.4. (생략) 제6조(발명의 신고)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7조(가승계의 결정)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(이하 “가승계”라 한다)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8조(권리의 양도)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 제9조(출원)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<u>지체없이</u>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제10조(발명자의 특허출원)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1.4. (현행과 같음) 제6조(발명의 신고) ----- ----- <u>지체 없이</u> ----- -----. 제7조(가승계의 결정) ① ----- 제10조제2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. 제8조(권리의 양도) ----- ----- ----- <u>지체 없이</u> -----. 제9조(출원) ① 제8조에 따라 ----- ----- <u>지체 없이</u> ----- -----.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 ③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. 제10조(발명자의 특허출원) ① ----- 제7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제11조(특허권의 등록)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제14조(특허권의 처분보상금) ① 구청장은 유상으로 구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매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1.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/100에 해당하는 액 2.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,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(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- 100만원) $\times 20/100 + 30$만원 3. 구 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,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(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- 1,000만원) $\times 10/100 + 210$만원 ② 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	② --- 단서에 따라 ----- 제6조에 -----. 제11조(특허권의 등록) ① 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특허권의 처분보상금) 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(제173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현행	개정안
제15조(보상금의 지분지급)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.	제15조(보상금의 지분지급) ----- ----- 2명 ----- -----.
제16조(전직·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)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.	제16조(전직·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) ① ----- ----- 제14조에 따른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보조금의 불반환)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7조(보조금의 불반환) ----- ----- ----- 다만, 「특허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	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.	② ----- 따른 ----- -- -----.
제19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19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----- 각 호 ----- -----.
1.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구 승계에 관한 사항	1. 제20조에 따른 ----- 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	3.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20조(자유발명의 승계) ① (생략)	제20조(자유발명의 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,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 내지 제24조를 각각 준용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-----.
제23조(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) ① (생략)	제23조(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,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.	② ----- 제13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.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24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-----.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(의안번호 1120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5. 1. 27.(화)
- 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2. 2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2. 6.(금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영국 행정지원국장)

- 상위 법령 변경 및 행정 여건에 맞춘 조문 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근거 법령을 「특허법」에서 「발명진흥법」으로 변경
- 나. 행정 여건에 맞춘 조문 개정 및 관련 법령 변경
- 다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